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 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40호)

2024. 11.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목 차

I. 제안 및 회부	1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검토의견	6

I. 제안 및 회부

가.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70인

나. 제안일자 : 2024년 8월 14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8월 16일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2025년 한일관계는 한일협정 60년을 맞이한다. 그러나 조약 체결 후 5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제 식민지배로 발생한 과거사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 2024년 7월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반복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군‘위안부’ 문제,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우키시마호 침몰사건 등 해결해야 할 대일 과거사 문제는 수없이 많다.

특히 불법적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3년 3월 피해 당사자와 유족을 비롯하여 국민적 반대가 있음에도, 한국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제3자 대위변제’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의 식민지배 불법성과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

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스스로 부정하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다는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2024년 7월에는 한국 정부가 한일 간 합의를 이루었다고 발표하고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했다.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 및 유족은 “전체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라”고 호소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이라는 용어 대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일본 측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를 가르는 두 용어의 결정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역사의식의 부재를 드러내고 말았다. 결국 일본이 사전 조치로 설치했다는 ‘한국인 노동자에 관한 박물관 전시’에 ‘강제성’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편을 들어 ‘2015 한일합의’ 정신 준수를 외치며, 유엔 등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배상과 ‘2015 한일합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 판결을 무시하고, 해외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직적 철거 압박과 설치 방해는 물론 국내 극우세력들의 수요시위 방해와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를 방관하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참사는 과거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은 2022년 프놈펜 선언, 2023년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바탕으로 한일 군사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배와 피지배국 사이의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한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볼 때 한일 군사동맹은 성립해서는 안 될 일이다. 또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책임을 바탕으로 평화헌법을 가진 일본에 있어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2015년 대한민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 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하다가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중단된 바 있다. 그럼에도 한일은 군사협력을 제도화하고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먼저 일제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대일 과거사의 정의로운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한일협정 60년을 맞아 추진하는 이른바 ‘신한일관계 선언’이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에 이은 굴욕적 대일관계 청산 선언,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공식화하는 선언이 될 것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굴욕적 대일 외교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 일본군‘위안

부' 문제 등 대일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에 대한 기술이 사라지게 되는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 및 일본군'위안부' 역사왜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조약에 준해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한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 검증을 요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식민지배,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는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2025년 한일협정 60년을 맞이함. 한국 정부는 한일협정 60년을 계기로 '신한일관계 선언'을 추진하고 있음. 한일관계에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들이 여전히 존재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제3자 대위변제’, 2015한일합의 등의 방식으로 대일 과거사를 해결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동조하며, 한일 군사협력을 꺾고 있음.

법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동맹은 불법이며, 추진되어서는 안 됨. 더구나 한일 군사협력은 한일관계 특수성을 볼 때 추진되어서는 안 됨.

이에 한국 정부에 굴욕적 대일외교와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함.

Ⅲ. 검토의견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 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은 우리 정부에 대해 ① 굴욕적 대일 외교 중단 및 일본의 식민지배 당시의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외교 노력을 촉구하고, ②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관련 일본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강제성에 대한 기술이 사라지게 된 경위를 밝힐 것을 촉구하며, ③ 한미일, 한일 군사동맹 추진 및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을 촉구하려는 것임. 한편 ④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강제동원 및 일본군 ‘위안부’ 역사 왜곡 중단을 촉구하려는 것임.

불법적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2018년 10월과 11월,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¹⁾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²⁾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³⁾ 대법원 판

1) 2018.10.30.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피고인 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인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함. 이후, 2018.11.29.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2건에서 피고인 일본기업(미쓰비시 중공업)이 피해자인 원고에게 1인당 최고 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함.

2) 1965년 6월 22일 조인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의 4가지 부속 협정 중 하나가 한일 청구권 협정임. 한국은 청구권 3억 달러와 경제 차관 2억 달러를 지원받기로 하고 1965년 한일협정을 마무리 지음.

3) 일본 측은 “청구권 협정으로 한일 양국과 국민 간 청구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만큼,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 협정 위반이며, 한국 정부가 이를 시정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2019.7.19.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의무 불이

결 이후 피고 기업의 사과나 판결금 지급과 관련된 진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2023년 3월 우리 정부는 입장 발표를 통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기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⁴⁾

2021년 1월, 2023년 11월 우리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음.⁵⁾ 이에 대해 당시 일본 모테기 외무대신은 “해당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우리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2015년의 한일 간 ‘위안부’문제에 대한 합의⁶⁾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한편 일본의 사도광산 관련하여 2024년 7월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가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 유산 등재를 결정하였음. 사도광산 등재 결정문 권고사항에는 ‘모든 광산 채굴 기간에 걸쳐 유산의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해석설명 전략 및 시설을 유산 현장에 구축한다’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사도광산 현장(사도광산에서 2

행 관련 외무대신 담화’, https://www.mofa.go.jp/press/release/press4e_002553.html

4)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 기준 15명 중 생존피해자 1명 포함 11명의 피해자 및 유가족 대상 판결금 지급 완료(2024. 7. 기준, 외교부)

5)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됨(2016가합505092).

6)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정부 간 합의가 타결되어 이를 통해 양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함.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을 사용하여 2016년 7월 대한민국 내에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함.

km떨어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엔 한국인 노동자들이 ‘모집’, ‘관 알선’ 등 조선총독부의 ‘관여’를 통해 모집되었고, 1944년부터 ‘징용(Requisition)’이 시행되어 의무적으로 작업이 부여되었다는 사실이 명시되었으나,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노역’ 등 노동환경의 강제성을 드러내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처럼 대한민국과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일본의 한국 주권 박탈, 일본군 ‘위안부’ 및 한국인 강제동원·강제노역 등 과거사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어왔음. 여전히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 등 과거사 해결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 대해 식민지배로 인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 등 피해자 중심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신한일관계 선언이 일본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을 우려하는 결의안의 취지는 타당함.

다만, 외교부에 따르면 결의안에서 염려하는 한미일이나 한일 군사동맹은 이를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사실이 없으며, 신한일관계 선언 역시 현 시점에서 정해진 것은 없고, 한일협력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성과를 도출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함. 또한 외교부는 실익을 추구하는 대일외교 관련 노력과 현재 신한일관계 선언 명목으로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동 결의안은 그 추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임.

따라서, 동 결의안은 역사적으로 지속된 한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 관계를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문 의 처
02) 6788-5263